

< 2018. 2.23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 설명회 Q & A 요약 >

Q1 :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정책은 정부 부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광고업계의 경우 언론중재재단은 일감몰아 주기를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중재재단에의 일감몰아 주기를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도 있음.

A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대상에 정부/공공기관이 포함 되어야 함. 공정위는 정부/공공기관의 경쟁법 위반에 많은 관심 갖고 있음.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의 전담기관이나 개별 시장에서 시장원리 작동 위해서는 각 산업담당 유관부처와의 협업이 중요함. 방송/문화 산업의 경우 문화관광부등 유관부처와 협업 체계 가동중이며, 방통위.과학기술정통위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중임.

Q2 : 공정거래법 개정시 개별 조문에 치중하는 개정보다 법 체계 전반을 고려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 환영함. 미 Obama 정부의 Modernization 정책 보고서 참고하기 바람. 법 개정시에는 법체계 전반을 고려한 거시적 접근시에는 대기업이나 러팜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사건처리/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미시적 접근도 중요함, 예를 들어 프렌차이즈 산업의 경우 사치성 품목을 취급하는 분야와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야는 법집행이 구분 되어야 함. 산업별로, 산업내 에서는 Segment 별로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법이 집행되어질 것을 요청함

A. 공정거래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학교에 있을 때는 기업 임직원도 많이 만났는데, 위원장이 된 후 대기업이나 러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적어졌는데, 좀 더 만나고 싶음. 또 경쟁법 연구 학회나 세미나에 공정위 직원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구

체적 타당성 있는 법집행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중인데 예를 들어 심사 보고서 공개범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등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의 1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임.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One for All 정책은 있을 수 없으므로 연성 법규(Soft Law)를 자세히 만들고 비용/편익을 고려해서 법집행이 구체적 타당성과 현실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음

Q3 : 법집행 체계 전반적 개선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위원장님의 지를 언론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한 바 있음. 전반적인 법체계 개선을 위한 법개정이 제대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제도 개편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법(예, 상법, 자본시장법, 형법) 의 관련 규정의 개정되어야 함. 효과적인 공정거래제도 개편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A. 발표자료에도 있듯이,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이나 사전규제 만으로는 부족하며,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모범 기준 등, 연성 규범(soft law)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하며, 상법, 금융관련법, 세법 개정 등을 위한 유관부처간의 조화시키는 노력이 진행 중임.

Q4 : 경쟁법의 공적집행은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나 법집행이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면 경쟁법의 사적(私的) 집행은 법집행의 현실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거나 소의 남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경쟁법 사적 집행의 구체적 방안은 ?

A. 증권거래법에 집단소송제도 도입시 소의 남발을 우려하였으나 그 우려는 과장 과장된 것으로 나타남.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제도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봄. 다만, 우리의 법률환경에서

소송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소송 전에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조정 및 중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Q5 : 공정위가 갑을 관계간 불공정거래행위 해소 위해 거래조건 위한 중소기업자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할 방침인데, 카르텔 혹은 담합행위는 경쟁법에서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금지하는 중요한 법 위반 사항임. 공동행위를 인가 받은 중소기업자들이 이를 빌미로 다른 담합행위를 하거나 공동행위 밖의 다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경우, 방해할 우려가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 공정위가 허용하려는 공동행위는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로서 이미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서 공정위가 실제로 공동행위를 허용하려는 대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임.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스스로 경쟁법 원리를 훼손시키는 카르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아님. 또한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허용 요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요건을 고시로 제정 하겠음.

Q6 : 2018년 1월부터 공정위가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시행이후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위 전직(前職) 직원등 외부인사 들과 소통하는 것을 매우 회피하고 있음. 공정거래제도를 구체성과 현실성 있게 제대로 운영하고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야 함. 외국 경쟁당국들은 외부인사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제도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

A : 아시다시피, 미국 로비스트법의 핵심은 사전 등록과 사후보고임.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사의 접촉금지 규정이 아니라 외부인사를 투명하게 만나도록 하는 규정인데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음. 동규정의 상반기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하반기 중에 보완할 예정임. 당초에는 공정위와 접촉하는 외부 인사를 사전 등록하려 하였으나 외부 인사를 접촉한 공정위 직원들에게 내부보고만 하도록 하였음. 1월중에 180건 정도의 내부 보고가 있었고 그 중 10 % 정도는 위원장의 보고 이었음. 시장 준칙 운영기관이 시장 Player 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일할 수가 없음. 공정위 직원들이 외부 인사와의 만남을 기피하지 않고 적극 만나도록 직원조회 등을 통해 애기하겠음.

Q7 : 원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2차 하도급 사업자와 3차 하도급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오히려 심각함. 2차 사업자와 3차 사업자가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소하여 2/3차 사업자간에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대등한 거래가 문화로 정착 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A : 2차 사업자와 3차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도 공정위의 주요 업무임. 이를 위해 공정위는 관련분야에 맞는 Soft Law 를 제정하려고 함. 비정규직 문제도 2/3차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면이 있음.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간에 계약 체결시 2/3차 하도급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는 방법도 강구중임

Q8 :공정거래법 집행시 법무부와 공정위가 협력하는 경우 효과가 클 것임. 예로서 제도운영 실적이 많지 않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규제분야에 법무부와 협력하면 효과가 클 것임

A : 최근에 발표한 경쟁법 운영 TF 운영 보고서에도 있듯이 공정거래법 운영에는 행정적 수단, 민사적 수단, 형사적 수단이 있음. 동 TF 운영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에 반영하였음. 공정거래법 운영 분야에 검찰과 협력은 필요한 사항임. 현재 검찰과 공정거래 위원회간에 공정거래사범 협의회가 있으나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 이 협의회를 벗어나서 검찰과 실무적으로 업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끝.

(*이 Q&A 요약은 김치걸 연세대법무대학원 외래교수가 요약한 것임).